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3,337,672	9,100,130
일반회계	261,770,135	7,853,104
특별회계	41,567,537	1,247,026
기타특별회계	41,567,537	1,247,0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00,663	87,020
낙동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26,207,820	786,235
농촌주택특별회계	10,597	3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2,207	14,766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538,394	106,152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0,668	7,82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498,143	104,944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82,238	14,4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7,418	19,42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251,253	97,538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78,136	8,344

제 2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68,23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